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7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0.

발 의 자:조승래·정준호·장철민

박정현 • 황정아 • 박용갑

박상혁 • 이정문 • 강준혁

박홍배 · 강선우 · 노종면

장종태 · 김현정 · 윤호중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·기관·단체·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,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독기관, 수사기관,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현행법 시행령에서 국회의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없거나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.

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하여 국회의원 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,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 는 것임(안 제6조제5호 신설). 법률 제 호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국회의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조(공익신고) 누구든지 공익침	제6조(공익신고)		
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			
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			
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		
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			
를 할 수 있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<u>5. 국회의원</u>		
<u>5.</u> (생 략)	<u>6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		